

1. 住宅建設促進法施行規則改正(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公告 第1995-353號 1995. 11. 25

1. 개정이유

동시행령 개정('95. 10. 5)에 따른 위임 사항 및 그동안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농어촌주택에 대해 별도의 규정없이 일률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던 것을 농어촌주택의 건설 및 개량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로 확대함.

나. 현재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국민주택자금의 증감에 상관없이 변경되는 때에는 모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지방자

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않은 때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다. 현재 지침이나 지시등으로 운영된 조합주택의 조합원 적격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시기를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그리고 사용검사시등 3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법령화함.

라.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고 있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소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을 준용하도록 함.

마. 현재 일정한 기준없이 6개 기관으로 특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을 앞으로는 안전진단기관의 적격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장비, 기

술인력을 갖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진단하도록 변경함.

- 바. 재건축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지침과 수수료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 504-91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